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6년 1월 11일

나. 제 안 자 : 김택호 의원 외 4인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월 18일

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택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동 상수도 요금 납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근거 마련 (안 제6조의4)
- 세대별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

-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공사비 및 시설 부담금은 세대별로 부담하며 주 계량기 다음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토록 함

라. 참고사항

- 수도법 2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동 상수도 요금 납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
- 계량기 전수의 증가로 계량기 관리비 및 검침 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며, 이로 인하여 상수도 요금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